##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24 발의연월일: 2024. 10. 8.

발 의 자:이인선・주호영・김소희

김상욱 • 이달희 • 조은희

박성민 · 정동만 · 박성훈

유영하 • 박수민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·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.

이에 알면서 소지·시청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는 점에서 "알면서"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(안 제11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### 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5항 중 "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"을 "청소년성착취물음을 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조(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	제11조(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		
제작·배포 등) ① ~ ④ (생	제작·배포 등) ① ~ ④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	⑤		
입하거나 아동· <u>청소년성착취</u>	<u>청소년성착취</u>		
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・시	물을		
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			
역에 처한다.			
⑥ · ⑦ (생 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		